

창업지원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창업지원 사업의 통합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지원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사업
2.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3. 창업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4. 시니어기술창업 운영 지원 사업
5. 이노캠퍼스 엑셀러레이팅 운영 지원 사업
6.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창업지원 사업 기획 및 운영
7. 그 밖에 지원단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지원단에 기술창업지원부, 글로벌창업지원부, 창업보육센터,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행정팀을 두고 각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 5. 15.)

- ② 기술창업지원부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프로그램의 지원과 운영을 담당한다.
- ③ 글로벌창업지원부는 학생과 (예비)창업자의 글로벌 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과 운영을 담당한다.
- ④ 행정팀은 지원단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임면) ① 단장과 부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

- ② 부장과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 ③ 행정팀장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 ④ 전문위원은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지원단의 필요에 따라 일반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고,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 ⑥ 창업중점교원, 책임멘토, 전문매니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및 중소기업청 창업지원단 운영 요령,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여 사업전반을 담당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과 센터장은 각 부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 ④ 지원단의 일반직원과 조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창업중점교원, 책임멘토, 전문매니저는 창업자의 창업아이템 검증, 자금유치, 판로확보 및 개척,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약간 명의 교내외 자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창업지원단 부단장, 학생복지취업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5. 15.)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장단기 운영계획 사항
-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운영위원회) 지원단은 사업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일반 행정

제12조(예산) 지원단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지원기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3. 우리 대학교의 지원금
- 4. 각종 단기 프로젝트 선정 지원금
- 5. 입주업체 창업보육수수료 및 기여금 수입금
- 6. 창업보육실 사용료 수입금
- 7.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회계) 지원단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른다. 다만,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예·결산 및 사업) 단장은 지원단의 예산과 사업계획서,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

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정 및 일반행정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에 관련한 운영지침과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 및 사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부 개정)
2.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